

자동화에너지 기술연구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 및 명칭)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에 두며, 그 명칭은 자동화에너지기술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09.11.1>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충남지역의 특화산업인 공조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, 환경, 에너지, 제어 등 공학관련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, 공동장비활용,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11.1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09.11.1>

1. 공동연구 수행 및 산업체 기술 지원 <개정 2009.11.1>
2.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핵심, 신기술 개발 <개정 2009.11.1>
3. 산학연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<개정 2009.11.1>
4. 공학분야 연계한 지역산업의 기술자립 및 창업 지원 <개정 2009.11.1>
5. 연구성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<개정 2009.11.1>
6.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, 심포지엄 개최 <개정 2009.11.1>
7. 학술정보 및 연구정보 수집 및 확산, 홍보 <개정 2009.11.1>
8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<개정 2009.11.1>

제2장 조직

제4조(직제) ①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②연구소에는 연구기획실, 홍보실, 행정실 및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③연구소에는 연구원 및 행정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제5조(소장 및 부소장) ①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9.11.1>

②부소장은 소장의 부재 시 또는 위임을 받아 소장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④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>

제6조(업무분장) 연구소 각 실의 책임자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며, 각 실의 업무분장은 다음 과 같이 한다. <개정 2009.11.1>

1. 연구기획실

- 가. 연구소 사업의 계획 및 관리, 조정<개정 2009.11.1>
- 나. 연구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
- 다. 외부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원의 교류, 유치<개정 2009.11.1>
- 라.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보관, 제공<개정 2009.11.1>
- 마. 대외 협력 및 홍보<개정 2009.11.1>
- 2. 행정실<개정 2009.11.1>
 - 가. 회계 처리 및 예·결산 업무<개정 2009.11.1>
 - 나. 제 규정 및 문서관리, 연구관련 자료 보관관리<개정 2009.11.1>
 - 다. 물품 및 공용기기의 구매·관리<개정 2009.11.1>
 - 라. 연구소 각 조직의 업무지원 및 일반현황 관리<개정 2009.11.1>
 - 마. 기타 서무일반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<개정 2009.11.1>
- 3. 홍보실<개정 2009.11.1>
 - 가.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
 - 나. 국내외 정보수집 및 교환
 - 다. 각종 간행물(연구업적물 보고집, 홍보지 등)편집 및 발간
 - 라. 세미나, 심포지엄 및 Work-Shop계획 수립 및 시행

제7조(기타직제) 연구소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 및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09.11.1>

제3장 위원회 및 협의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09.11.1>

②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위원은 소장의 제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9.11.1>

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연구기획실장이 된다.<개정 2009.11.1>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참석이 불가 한 위원은 위 입장을 통해 그 권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09.11.1>

⑤위원회는 연구소의 중요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신설 2009.11.1>

제9조(자문위원회) ①연구소는 필요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09.11.1>

②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역사회경제단체의 장, 관련 산업계의 인사 및 국내외 대학 과 연구소의 관련기관장 및 전문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09.11.1>

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연구사업의 진행 및 실적 관리) ①연구소는 년 1회 이상 연구결과 논문집을 발행 한다.<개정 2009.11.1>

②연구소는 각종 세미나, 심포지엄,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.<개정 2009.11.1>

③연구소장은 학교 내부 자체평가 및 각 해당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사항을 소속 연구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연구원은 요청받은 사항을 준비하고, 이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〈신설 2009.11.1〉

제11조(재정) ①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, 그 재원은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의 찬조·보조금 및 연구수탁금, 교비지원금,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.〈개정 2009.11.1〉

②본조 제1항의 교비지원의 범위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공용 기기의 구입비 등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연구소의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.〈개정 2009.11.1〉

③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며, 원칙적으로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〈개정 2009.11.1〉

④재정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각 연구과제 및 사업별로, 관련된 관련기관의 요청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정한다.〈개정 2009.11.1〉

제12조(해산 후 재산의 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〈개정 2009.11.1〉

제4장 운영 및 재정

제13조(보고) 소장은 예·결산, 주요사업계획 등 연구소의 교내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9.11.1〉

제14조(규정의 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학교의 지침에 따르며, 특정기관 과 별도의 협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따른다.〈개정 2009.11.1〉

부칙〈1998.6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1999.5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.11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전면개정을 하며, 본 연구소가 공조기술연구센터(RRC)에서 관할하던 제반시설 및 연구정보 등을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